

DSC공유대학 학사운영 규정

제정 2024.01.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라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학위”라 함은 본교와 협약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협약대학들이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2.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이하 “DSC 공유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 대학 중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으로 공동학위에 대하여 참여 대학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의 융합학부(전공)를 DSC공유대학이라 한다.
3. “참여대학”은 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과 또는 전공이 참여하는 대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들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제4조(수업형태) 수업은 학기 중 실시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직제) ① DSC 공유대학의 학장은 융합교육원장이 겸직한다.

- ② 참여대학 간 융합전공의 교무를 통괄하여 운영하는 주관대학 [별첨2]에서 전공주임교수를 정할 수 있다.
- ③ 주관대학의 전공주임교수는 참여대학의 융합전공 참여교수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공동학위 전공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3장 융합학부(전공) 및 학생정원

제6조(융합학부, 융합전공) DSC 공유대학에 [별첨1]의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을 둔다.

제7조(학생정원) DSC 공유대학의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선발

제8조(선발방법) ① 선발방법은 복수전공으로 한다.

- ②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이하 “대학교육혁신본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절차)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수전공 지원서
2. 소속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3. 기타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 정한 서류

제10조(전공의 변경) ① DSC 공유대학에 선발된 학생은 융합전공 간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② DSC 공유대학 내 융합전공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참여 대학의 자유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참여대학의 주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은 참여대학 주전공 학과장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DSC 공유대학의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은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정한다.
 ② DSC 공유대학 내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편성학점은 최소 9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교과목 설강) ① 교과목은 각 대학에서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사정으로 교과목 설강이 어려울 때에는 융합전공 주관대학의 교과목을 학점교류로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교과목 주관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교육혁신본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수강신청 전에 참여대학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등) ① 참여학생 및 일반학생은 대학교육혁신본부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수강학생 확인 및 분반 등을 결정하여 각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참여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육혁신본부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변경하고, 대학교육혁신본부는 변경 결과를 각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학생이 수강을 철회할 때에는 각 참여대학에서 정한 수업일수 1/4선 내에 대학교육혁신본부로 신청하여야 하고,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철회 결과를 각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참여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3학점 범위내에서 융합학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

제15조(타 융합전공의 학점인정) 학생이 소속한 융합전공 이외에 DSC 공유대학 타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소속한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성적평가 및 제출) ① 융합전공의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각 교과목 주관교수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 정한 기일 내에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성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첨3과 같다.

제17조(강의평가) 강의평가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제1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DSC 공유대학 내 융합전공별로 지정한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③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공동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약대학과의 협약서에서 정하되, 별첨4의 학위종별에 의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

- ② 마이크로디그리과정별로 지정된 최소학점 이수 시 학위증에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표기한다.

제7장 포상

제20조(포상)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1조 (기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서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융합교육과정위원회의 협의하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24.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DSC 공유대학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설치현황(제7조 관련)

대학명	융합학부	융합전공	비고
DSC공유대학	모빌리티 소재 부품장비	친환경동력시스템전공 지능형전장제어시스템전공 첨단센서융합디바이스전공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소부장 전공	공동학위
	모빌리티 ICT	자율주행시스템전공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전공 차세대통신융합전공 모빌리티SW/AI융합전공	공동학위
계	2개 학부	8개 전공	

[별첨 2]

DSC 공유대학 융합전공 주관대학

대학명	융합전공	주관대학
DSC공유대학	친환경동력시스템전공	공주대학교
	지능형전장제어시스템전공	선문대학교
	첨단센서융합디바이스전공	한밭대학교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소부장 전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율주행시스템전공	고려대학교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전공	순천향대학교
	차세대통신융합전공	충남대학교
	모빌리티SW/AI융합전공	충남대학교

[별첨 3]

DSC 공유대학 성적기준

등급	만점(실점)	평점(4.5)
A+	95~100	4.5
A, A ⁰	90~94	4
B+	85~89	3.5
B, B ⁰	80~84	3
C+	75~79	2.5
C, C ⁰	70~74	2
D+	65~69	1.5
D, D ⁰	60~64	1
F	60미만	0

[별첨 4]

DSC 공유대학 융합전공 학사 학위

구분	융합전공	학위명	영문 학위명
DSC공유대학	친환경동력시스템전공	공학사	Bachelor Engineering
	지능형전장제어시스템전공	공학사	Bachelor Engineering
	첨단센서융합디바이스전공	공학사	Bachelor Engineering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소부장 전공	공학사	Bachelor Engineering
	자율주행시스템전공	공학사	Bachelor Engineering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전공	공학사	Bachelor Engineering
	차세대통신융합전공	공학사	Bachelor Engineering
	모빌리티SW/AI융합전공	공학사	Bachelor Engineering